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사업수행 표준협약서

<자율추진사업용>

- 협 약 번 호 : 20260173-0001
- 사 업 명 : 민간기업 협업 소득증진사업(인천 어촌마을 新관광모델 개발? 운영) (20260173)
- 협 약 기 간 : 2026년 7월 1일 ~ 2026년 12월 31일 (6 개월)
- 사 업 비 : 28,500,000원
- 출연기관의 장 : 이경규
- 협 약 당 사 자 협력재단의 장 : 변태섭
- 수행기관의 대표 : 홍종욱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운영본부에서 시행하는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에 관하여 출연기관, 수행기관, 협력재단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협약목적)

본 협약은 수행기관의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8조의 2)에 따라 궁극적으로 농어촌, 농어민의 복지향상 및 민간기업과 농어촌, 농어민의 협력사업 확대에 그 목적을 둔다.

제2조 (사업수행의 신의성실의무)

1. 출연기관, 수행기관, 협력재단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운영요령(이하 “운영요령”이라 한다)에 따라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2. 수행기관은 본 협약서 및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관련 서류를 상시 비치하고 협약기간 동안 본 사업의 완수를 위하여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제3조 (사업비 지원 및 관리)

1. 협력재단은 수행기관의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협약서에 명시된 사업비를 지급하며, 사업비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는 협력재단이 정한 바에 따른다.
2. 협력재단은 심의조정위원회를 통해 최종 확정된 사업비를 수행기관에 교부하며, 교부 시 수행기관이 제출한 사업계획서가 사업지침과 기준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부하여야 한다. 단 제7조에 따라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3. 수행기관은 교부받은 사업비를 운영요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사업자금과 분리하고 별도 회계처리하고 기금관리시스템을 통해 사업비를 집행·관리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서에서 정한 비목별로 사용하되, 협력재단이 지정된 방식에 따라야 한다. 또한 증빙서류는 협약 종료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4. 수행기관은 확정된 사업계획서상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상호간의 계약을 통해 사업비를 지급하고, 참여기업이 지급받은 사업비를 제3항에 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사용토록 관리하여야 한다.
5. 협력재단은 현장·최종 등 점검을 통해 수행기관의 사업계획 이행여부를 점검함에 있어 이를 출연기관과 함께 할 수 있다.
6. 점검 및 사업 진행 중 수행기관의 사업비 용도의 사용, 사업계획의 불이행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협력재단은 수행기관의 사업을 즉시 중단하고, 사업지침과 기준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7. 사업과 관련하여 고정자산 취득 시, 협약기간이 종료되어도 해당 자산은 내구연한이 끝날 때 까지 사업운영에 사용되어야 하며, 사업계획서상 사업 추진기간 중 폐업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자산 처분 시 협력재단으로 해당 처분금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수행 및 사업완료)

1. 수행기관은 사업 지침 및 기준에 따라 주관부서가 지정한 회계법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 및 최종 보고서 등을 협력재단에 제출하고, 필요에 따라 현장·최종 등 점검 및 평가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2. 협력재단은 수행기관으로부터 접수받은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심의조정위원회에 보고한다.



제5조 (관련자료 제출 등)

1. 수행기관은 협약기간 중 협력재단이 사업 관련자료, 현장 확인 및 서류제출
· 열람 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 수행기관은 협력종료일로부터 5년간 협력재단이 사업성과 등 관련 자료를
요청 시,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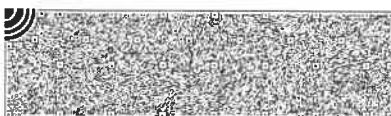
제6조 (협약의 변경)

1. 수행기관이 사업 추진 중 협약 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운영요령 제22조
에 따라 협약을 변경할 수 있으며, 협력재단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이 발생 시
출연기관의 사업변경 승인공문을 첨부하여 협력재단에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요
청할 수 있다.
2. 협력재단은 수행기관이 제출한 협약 변경 승인요청서 상 변경사유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협약의 변경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출연기관과 수행기관에 해당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협약의 해약)

1. 협력재단은 아래의 각 호에 해당하는 중대한 위반을 하였을 경우에 본 협약을 각 각 해약할 수 있다.
 - 가. 수행기관의 대표자 및 책임자, 참여기업의 대표자 및 책임자 등 본 협약에 의한 사업을 수행 또는 활용하는 자의 최종보고서 미제출, 중대한 문제 발생 또는 심각한 부정이 발견될 경우
 - 나. 수행기관의 사업 수행이 지연되거나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사업추진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사업을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다. 수행기관이 사업의수행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 라. 수행기관에게 천재지변, 부도·회생계획의 불인가·폐업, 대표자의 채무 불이행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사업의 계속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마. 수행기관이 제 3조에 의해 사업비를 부적정하게 집행 또는 관리하였을 경우
 - 바. 수행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4조에 의한 최종보고서를 3개월 이상 지체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 사. 수행기관의 의무사항 불이행이 발생하여 해소가 되지 않았을 경우 및 사업 책임자가 3개월 이상 공석인 경우
 - 아. 외부압력,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수행기관 등으로 선정된 경우 및 사업의 신청자격에 위배되거나 중복 선정됨이 협약이후 확인된 경우
2. 협력재단은 1항의 사유 발생 시 사업비 환수를 위한 제재 및 채권추심 등의 행정행위를 취할 수 있다.
3. 수행기관은 본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 잔여 사업비의 사용을 즉시 중지하고 제3조에 의거 지급받은 교부금의 집행내역과 사용 잔액을 협력재단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하며, 협력재단의 정산결과에 따른 환수결정액을 협력재단의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협력재단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제8조 (사업비의 정산)

1. 수행기관은 사업기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회계법인을 통해 사업비 집행 적정성 등을 점검하고 사업비를 정산하여야 하고, 정산 결과 정산잔액 및 사업비 불인정 금액이 발생할 경우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2. 협력재단은 본 협약기간 종료 후, 수행기관의 사업비 집행 적정성 등을 점검하고 사업비를 정산하여야 한다.

제9조 (비밀보장)

출연기관, 수행기관 및 협력재단은 본 협약의 이행과정에서 상대방이 제공하는 모든 정보 및 자료를 사전 동의 없이 어느 누구에게도 판매, 복사, 발표 정보제공 및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일체 할 수 없으며, 구성원 중 어느 일방이 이를 준수하지 않아 상대방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피해보상 등을 하여야 한다.

제10조 (사업성과물의 활용)

1. 수행기관은 최종보고서 발행, 사업화 성과의 간행물 게재, 홍보 및 전시회 출품 등 사업 수행 결과에 대한 대외 발표 시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지원”에 의한 성과물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2. 사업수행 과정에서 우수한 성과가 발생하여 협력재단이 기금 홍보의 사례로 사용 요청시 출연기관과 수행기관은 적극적으로 이에 협조한다.

제11조 (관계법령의 준수)

1. 출연기관, 수행기관, 협력재단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인세법,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운영요령에서 정해진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본 협약기간 중 관계법령, 사업 요령 및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출연기관, 위탁기관, 협력재단은 변경된 법령, 지침 및 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12조 (해석)

본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 및 본 협약 내용에 대한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는 협력재단의 해석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13조 (협약의 효력)

본 협약서 효력은 협약 당사자 간에 서명·날인한 날로부터 유효하며, 본 협약서는 출연기관, 수행기관, 협력재단이 각 1부씩 보관한다.

[붙임] 1. 사업계획서(최종본) 1부.

2026년 7월 21일

출 연 기 관	:	인천항만공사
대표자	:	이경규 (전자서명)
수 행 기 관	:	한국어촌어항공단
대표자	:	홍종욱 (전자서명)
협 력 재 단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대표자	:	변태섭 (전자서명)

